

##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(사서) 공무원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(사서)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 채용분야 직급 및 인원

분야	직급	인원	임용기간	근무부서	직무내용
사서	일반임기제 8급	1명	임용일 ~ 2년	문화관광국 (교육과)	-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- 구립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- 기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

※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

### 2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
- 지방공무원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규칙

## ○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연령 : 만 18세 이상

- 직무분야 자격요건 : 2급 정사서 이상 자격 소지자
- 우대사항 : ① 응시자격 취득 이후 도서관 사서업무 근무 경력
  - 「도서관법」 제2조 제4호~제7호에 해당하는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
  - 경력은 경력(재직)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② **관련학과 학위소지자** : 문헌정보학과, 도서관학과 등

## 4 보수 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  - 기본연봉(채용예정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)

구분	상한액	하한액
일반임기제 8급	54,431천원	38,827천원

- 연봉 외 급여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른 각종 수당

##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- 응시원서 접수
  - 접수기간 : 2022. 1. 11.(화)~1. 13.(목) <3일간 09:00~18:00>
  - 접수처 : 종로구청 교육과 (종로구청사 8층)
  - 접수방법 : **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** ※ 퀵서비스, 택배, 팩스,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
    -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
    - 주소 : (03152)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8층 교육과
   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   - ※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   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 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 접 시 험		면접합격자 발 표
	일 시	장 소	
2022. 1. 19.(수)	2022. 1. 21.(금) 14시 ※예정	회의실 2 (종로구청 3층)	2022. 1. 24.(월) 예정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### 가. 1차 시험 (서류 전형)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### 나. 2차 시험 (면접 시험) : 개별 통보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 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
### 다. 최종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※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발생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## 1. 응시원서(별지서식 제1호) 1부.

- ⇨ 응시수수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5,000원 ※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12번 창구  
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 
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2. 이력서(별지서식 제2호) 1부.

- ⇨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.

## 3.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(사본) 1부.

## 4. 자기소개서(별지서식 제3호) 1부.

## 5. 직무수행계획서(별지서식 제4호) 1부.

## 6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별지서식 제5호) 1부.

## 7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서식 제6호) 1부.

## 8.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.

## 9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(석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.

- ⇨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
 ⇨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## 10.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원본) 1부.

- ⇨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
 ⇨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  
 ⇨ 비상근직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
 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 
 ‘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서식 제7호)’ 추가 제출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
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## 7

##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,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(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)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종로구 홈페이지(www.jongno.go.kr)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종로구 교육과 도서관운영팀(☎ 02-2148-202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